

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

[시행 2025. 1. 1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4-79호, 2024. 12. 30., 일부개정]



고용노동부(산재보상정책과), 044-202-8839

I.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

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1일 48,232원으로 한다.

II. 행정사항

1. 시행일

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유효기간

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